

2024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2024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21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11. 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24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(안)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 주요골자

가. 2024년도 평창군기금조성 규모는 총 8개 기금 23,08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,472백만원이 감소하였음.

나.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:천원)

기금명	2023년도말 조성액 [㉠]	2024년 운용계획		2024년도말 조성액 $(d)=(a)+(b)-(c)$	증감 $(e)=(d)-(a)$
		수입 [㉡]	지출 [㉢]		
합계(8개 기금)	26,561,028	2,642,806	6,114,936	23,088,898	△3,472,130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2,399,496	2,480	2,323,125	78,851	△2,320,645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재정안정화계정)	11,176,272	354,776	0	11,531,048	354,776
체육진흥기금	2,677,586	568,000	1,066,000	2,179,586	△498,000
자활기금	499,633	15,239	30,000	484,872	△14,761
고향사랑기금	240,116	282,262	0	522,378	282,262
재난관리기금	1,354,583	527,558	900,000	982,141	△372,442
옥외광고발전기금	208,191	32,751	20,000	220,942	12,751
식품진흥기금	120,567	33,794	33,705	120,656	89
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7,884,584	825,946	1,742,106	6,968,424	△916,160

※ 수입 :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/ 지출 :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
※ 융자금은 지출 ㉢에 포함하여 계상함.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 제159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